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강 선 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71
----------	---------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강선영, 이종숙, 이충현,
박성호, 홍재희, 전철규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2조)
- 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깃대종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 라.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생물 구조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마. 생태계 교란생물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 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 홍보를 규정함 (안 제13조 ~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제3항~ 제5항, 제29조 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제3항, 제32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제4항, 제34조의4 제1항 ~ 제3항
- 나. 협조부서 : 공원녹지과
- 다. 입법예고 : 23. 5. 31. ~ 6.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나 지형, 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 일시
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① 구청장은 구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보전·복원 등 보전계획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

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제29조(교육 홍보)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

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 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

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